

## 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제 정 안	의 견	사 유

## 나.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0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정부세종청사 5동  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
- 전자우편 : minhye8817@korea.kr
- 팩스 : 044-861-9436

## 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(044-200-563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●소방청공고제2020-150호

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4일

소 방 청 장

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7) 제정(안) 행정예고

## 1. 제정이유

최근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바, 관련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,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3조)
- 나. 소화기는 전기저장시설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전기저장시설에 12.2 /min/m<sup>2</sup> 이상의 수량이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(안 제6조)
- 마.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정함(안 제7조)
- 바.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(안 제8조)

사.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9조 내지 제11조)

아.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자동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항을 미적용 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2조)

### 3. 의견 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(참조 : 소방분석제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일반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[assa44@korea.kr](mailto:assa44@korea.kr)

2)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,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(우)30127

3) 팩스 : 044-715-7621

4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(전화 : 044-205-753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및 소방청 홈페이지(<http://www.nfa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 ●소방청공고제2020-151호

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4일

소 방 청 장

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A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2019년 8월 6일자로 개정된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5] 개정사항을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수원·가압송수장치 및 비상전원 기준에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5]를 인용하였으며 시행령 [별표 5]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기준에 반영함(간이헤드 기준개수 5개 및 방수시간 20분 적용 대상)(안 제4조제1항제2호, 제5조제1항·제5항제1호 및 제7항, 제12조)

### 3. 의견 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(참조 : 소방분석제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